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38
----------	------

발의연월일 : 2024. 8. 21.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박주용 의원, 이연숙 의원

##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변경 및 기 지정된 금연구역을 명확히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문을 정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나. 금연구역의 지정·지정 변경·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다. 교육 및 홍보 관련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금연지도원 위촉임가직무수행 범위·활동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마.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이에 수반되어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흡연자”란 흡연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 본인의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흡연이 금지된 곳으로 지정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유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의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서류로써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람이 법 제9조의5제1항 및 영 제16조의5제1항에 정한 자격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 임기 등)**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구역 지정·변경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조례에 따라 지정·변경된 금연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공포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특례) ① 이 조례의 공포 후 제13조제1항이 시행되기 전까지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지정·변경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종전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의 공포 후 제13조제1항의 시행 전 그에 관하여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 공포 후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지정·변경된 금연구역에서는 그 지정·변경일부터 6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제1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및 그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각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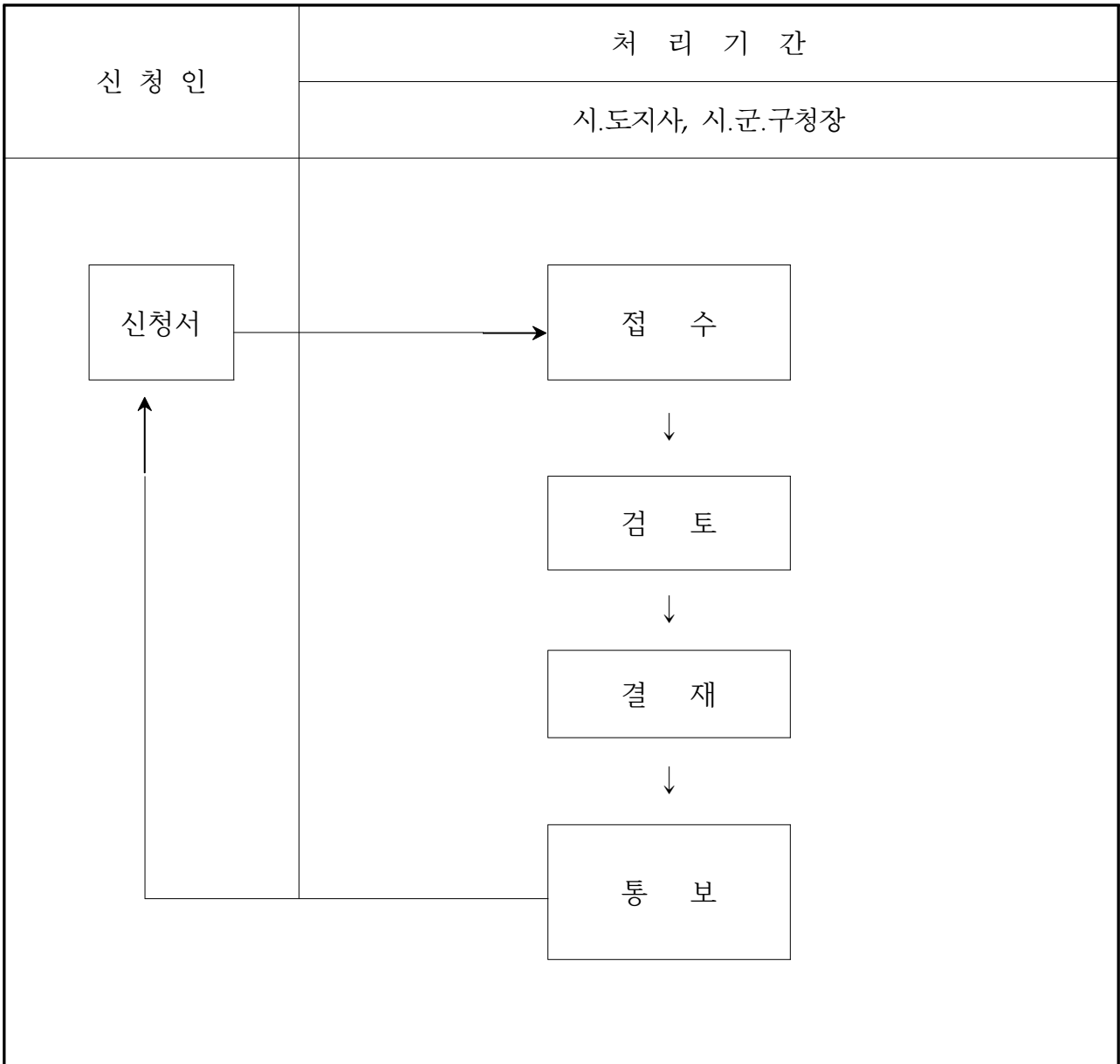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탈의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서식]

##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금 연 지 도 원  
위 촉 장**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b>(앞 쪽)</b>
<p>제 호</p> <p><b>금연지도원증</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p></div> <p><b>성 명</b> 대구광역시 달성군수</p> <p>60mm×90mm</p>
<p><b>(색상 : 연파랑)</b></p>
<b>(뒤 쪽)</b>
<p>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p> <p>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p> <p>대구광역시 달성군수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p>
<p>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p>
<p>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or 플라스틱</p>



[별지 제7호서식]

<b>단독 직무수행 승인서</b>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성별 남,여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p>「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b>대구광역시 달성군수</b>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10px;">직인</span> </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국민건강증진법(법률)」(2023.8.16. 일부개정, 2024.8.17. 시행)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9.26. 일부개정, 2023.9.29. 시행)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